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- 10호

「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9년 5월 30일

상 주 시 의 회



「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, 소외·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고독사 예방 지원계획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4조, 제5조)
- 라. 예방 및 지원사업,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

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